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| 번호 | 성명 | 생년월일 | 발급기간 | 공고사유 |
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강*우 | 2007.04.19. | 2024. 5. 1. ~ 2025. 4. 30. | 폐문부재 |
| 2 | 곽*재 | 2007.04.30. | 2024. 5. 1. ~ 2025. 4. 30. | 폐문부재 |
| 3 | 박*혁 | 2007.04.02. | 2024. 5. 1. ~ 2025. 4. 30. | 폐문부재 |
| 4 | 박*하 | 2007.04.29. | 2024. 5. 1. ~ 2025. 4. 30. | 폐문부재 |
| 5 | 조*신 | 2007.04.14. | 2024. 5. 1. ~ 2025. 4. 30. | 폐문부재 |

2. 공고기간 : 2024. 4. 15. ~ 2024. 4. 29. [14일간]

3. 신청기관 :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
4. 준비물

-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
-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·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
-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(3.5cm×4.5cm)

5.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6. 문의 :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(☎ 031-5189-4074)

2024년 4월 15일

동 탄 3 동 